

---

# 해커스패스

# 전산세무 2급

## 이론+실기+기출문제

---

### 세법 개정자료

2015년 교재 출간 후 2016년 1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수정 및 추가되는 내용입니다.  
2015년 최신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여 학습하시길 바랍니다.

---

### 2016 개정세법 완벽반영

---

## <해커스패스 전산세무 2급 이론+실기+기출문제(2015년 최신판)> 세법 개정 자료

※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사항을 토대로, 해커스 전산세무 2급 교재에 수정 되어야할 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.  
 2015년 최신판 <해커스패스 전산세무 2급 이론+실기+기출문제> 교재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2016년 전산세무 2급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

(2016.01.22 업데이트)

Page	위치	구분	수정 전	수정 후
<b>본문 개정 반영 사항</b>				
420	(4)	수정	법인 : <b>30%</b> , 개인 : 40~60%	법인 : <b>35%</b> , 개인 : 40~60%
421	중간	수정	(참고)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는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· 공급시기 이후이면서, 공급시기가 속하는 <b>과세기간</b> 내에 발급받은 경우 : ~ · 공급시기 이후이면서, 공급시기가 속하는 <b>과세기간</b> 경과 후에 발급받은 경우 : ~	(참고)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는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· 공급시기 이후이면서, 공급시기가 속하는 <b>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</b> 내에 발급받은 경우 : ~ · 공급시기 이후이면서, 공급시기가 속하는 <b>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</b> 경과 후에 발급받은 경우 : ~
423	하단	수정	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그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.( <b>법인은 불가</b> )	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그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.( <b>법인과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불가</b> )
424	상단	삭제	(2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·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.(법인은 불가) $\text{공제액} = \text{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} \times 200\text{원}$	삭제
487	하단 표	수정	일반과세자 중 영수증발급사업자( <b>법인제외</b> )이거나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법적증빙을 발행하면 다음의 세액을 공제해준다.	일반과세자 중 영수증발급사업자( <b>법인과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</b> )이거나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법적증빙을 발행하면 다음의 세액을 공제해준다.
487	하단 표	추가	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·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·전송한다면 다음의 세액을 공제받는다. · 세액공제액 = $\text{Min}[\text{㉠}, \text{㉡}]$	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·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·전송한다면 다음의 세액을 공제받는다. · 세액공제액 = $\text{Min}[\text{㉠}, \text{㉡}]$

			㉠ 전자세금계간서 발급건수 × 200원 ㉡ 한도 : 연간 100만원	㉠ 전자세금계간서 발급건수 × 200원 ㉡ 한도 : 연간 100만원  • 2015년 12월 31일 신고분까지만 적용한다.
520	하단 box	수정	1) 법인 : <b>30%</b> , 개인 : 40~60%	1) 법인 : <b>35%</b> , 개인 : 40~60%
524	㉡	수정	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 = (재활용폐자원가액 × <b>5/105</b> ) + (중고자동차 매입가액 × 9/109)	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 = (재활용폐자원가액 × <b>3/103</b> ) + (중고자동차 매입가액 × 9/109)
573	(2)	수정	•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(전액 비과세)과 축산 이외의 농가부업소득(연 <b>2,000만원</b> 비과세)	•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(전액 비과세)과 축산 이외의 농가부업소득(연 <b>3,000만원</b> 비과세)
605	중간	추가	① 공제대상자와 공제요건 (표에서) 연간소득금액(종합+퇴직+양도)100만원 이하	① 공제대상자와 공제요건 (표에서) 연간소득금액(종합+퇴직+양도)100만원 이하(*1)  <b>(*1)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, 근로소득만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원(=근로소득금액 150만원)까지 인정된다.</b>
608	표	수정	(소득공제액에서) ㉠ 공제가능금액의 합계액 : (신용카드 사용분×15%) + (현금영수증 사용분×30%) + (대중교통 이용분×30%) + (전통시장 사용분×30%) + (현금영수증·대중교통·전통시장 증가분× <b>10%</b> )(*1)  (*1) <b>2015년 상반기</b> 의 현금영수증·대중교통·전통시장 사용분이 과거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<b>10%</b> 를 추가로 공제한다.	(소득공제액에서) ㉠ 공제가능금액의 합계액 : (신용카드 사용분×15%) + (현금영수증 사용분×30%) + (대중교통 이용분×30%) + (전통시장 사용분×30%) + (현금영수증·대중교통·전통시장 증가분× <b>20%</b> )(*1)  (*1) <b>2016년 상반기</b> 의 현금영수증·대중교통·전통시장 사용분이 과거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<b>20%</b> 를 추가로 공제한다.
610	㉤	수정	㉠ 공제대상기부금 × 15%( <b>3,000만원</b> 초과분은 <b>25%</b> )	㉠ 공제대상기부금 × 15%( <b>2,000만원</b> 초과분은 <b>30%</b> )
<b>별책부록 개정 반영 사항</b>				
별책부록-연말정산필수암기노트 26	중간	추가	② 소득금액 요건의 판단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<b>종합소득금액, 퇴직소득금액,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</b> 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.	② 소득금액 요건의 판단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<b>종합소득금액, 퇴직소득금액,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</b> 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. <b>다만, 근로소득만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원(=근로소득금액 150만원)까지 인정된다.</b>
별책부록-연말정산필수암기노트 33	하단	수정	(실기포인트) ~ · ‘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’이 2013년보다 증가한 경우 추가 공제를 사용액 공제가 적용되므로 문제에 관련내용이 있다면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.	(실기포인트) ~ · ‘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’이 2014년보다 증가한 경우 추가 공제를 사용액 공제가 적용되므로 문제에 관련내용이 있다면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.

[참고] 2016년 세법 개정사항

\* 출처 : 기획재정부

위 '해커스패스 전산세무 2급 세법 개정 자료'에 반영된 2016년 세법 개정안 원문입니다.

구분	종 전	개정 후	비고
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)	<input type="checkbox"/>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○ 원칙: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○ 예외: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<b>과세기간</b> (가산세는 부과)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취기한 연장 ○ (좌 동) ○ 예외: <b>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*</b> (가산세는 부과) * 제1기(1~6월): 7.25일 제2기(7~12월): 다음해 1.25일	<개정이유>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부담 경감 <적용시기> '16.1.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)	<input type="checkbox"/>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1. 법인사업자: 과세표준에 100분의 3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	<input type="checkbox"/>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1. 법인사업자: 과세표준에 <b>100분의 35</b>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('16년말까지 한시 적용)	<개정이유>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법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
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(부가가치세법 제46조)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○ 적용대상: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<b>개인사업자*(법인 제외)</b> * 소매·음식장·숙박·전문직사업자 등 영수증발급 사업자 ○ 공제율: 1.0%('16말까지 1.3%) * 단, 음식·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.0%('16말까지 2.6%) ○ 공제한도: 연 500만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대상 조정 ○ 일정 <b>매출액(10억원) 초과</b> 개인사업자는 적용 제외 ○ (좌 동)	<개정이유>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<적용시기> '16.1.1. 이후 신용카드등 매출분부터 적용
전자세금계산서 발급·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종료(부가가치세법 제47조)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세금계산서 발급·전송에 대한 세액공제(건당 200원) ○ 적용기한: '15.12.31.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 종료	<개정이유>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 등 감안
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(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)	○ 재활용폐자원 :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. ○ 중고자동차 : 109분의 9	○ 재활용폐자원 : <b>103분의 3</b> ○ 중고자동차 : 109분의 9	<특례기한 종료>
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확대(소득세 시행령 제9조)	<input type="checkbox"/> 농가부업소득 범위 ○ 농가부업규모의 축산과 그 이외에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농가부업소득으로 연 합계액이 <b>2,000만원</b> 이하의 소득을 말한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농가부업소득 범위 ○ 농가부업규모의 축산과 그 이외에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농가부업소득으로 연 합계액이 <b>3,000만원</b> 이하의 소득을 말한다.	<개정이유> 한·중 FTA 후속조치

<p>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(소득세법 제50조 제1항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본공제 대상자(배우자, 부양가족) 소득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* 이하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신 설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수준</li> <li>※ 총급여 333만원 × (1 - 근로소득공제 70%) = 근로소득금액 100만원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</li> </ul>	<p><b>&lt;개정이유&gt;</b> 소득세 세부담 경감</p> <p><b>&lt;적용시기&gt;</b> '16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</p>
<p>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 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등 소득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제금액: 총급여 25%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</li> <li>○ 공제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용카드: 15%</li> <li>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: 30%</li> <li>- 전통시장·대중교통비: 30%</li> <li>- '14년 하반기, '15년 상반기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·전통시장·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'13년 사용분의 50%보다 증가한 금액*: 40%</li> <li>* '13년 대비 '14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신 설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제한도: 300만원(전통시장·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)</li> <li>○ 적용기한: '16.12.31.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- (좌 동)</li> <li>- '15년 하반기, '16년 상반기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·전통시장·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'14년 사용분의 50%보다 증가한 금액*: 50%</li> <li>* '14년 대비 '15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	<p><b>&lt;개정이유&gt;</b>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심리 개선</p> <p><b>&lt;적용시기&gt;</b> '15.7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</p>
<p>고액기부금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(소득세법 제59조의 4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액기부금액 기준 : 3천만원</li> <li>○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: 25%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3천만원 → 2천만원</li> <li>○ 25% → 30%</li> </ul>	<p><b>&lt;개정이유&gt;</b>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</p>